

네이버 주식회사

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-03-24

개정 2023-12-20

개정 2026-03-23

개정 2026-08-04

제1장.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네이버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이사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,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

위원회는 운영, 재무, 인사, 법무,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 영역에서 리스크를 식별, 평가, 대응,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,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의 진단 및 사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 또한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 <개정 2026.03.23>

제3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의무)

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운영지침)

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제2장. 구성

제7조(위원)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이사를 3인 이상 포함하고 독립이사의 수를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07.23>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위원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07.23>

제8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사무국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위원회 및 사무국은 회사의 각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.
- ② 위원회 및 각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, 회사의 법무, 재무, 인사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정보 및 업무현황 자료 요청 및 업무 협업 요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장은 위원회의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직원 수명을 사무국에 둘 수 있다.

제3장. 회의

제10조(회의의 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3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회의 소집 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11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, 본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은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2조(소집절차)

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/전자문서/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3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결의의 유형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.
 - 1. 승인: 원안의 내용과 다름없이 가결함
 - 2. 수정 승인: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
 - 3. 보완: 원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을 지시하고, 차기 위원회에서 반드시 재결의함
 - 4. 부결: 원안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부결하며, 동일한 사업년도 위원회에 재부의할 수 없음
 - 5. 보고완료: 보고사항의 보고를 완료함
- ③ 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·직원 및 외부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결의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.

제 4 장. 부의사항

제 15 조(부의사항의 종류)

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아래 각호와 같이 결의사항, 심 의 사 항 , 보고사항, 논의사항으로 구분한다.

1. 결의사항: 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승인, 수정승인, 보완, 부결로 결의함
2. 심의사항: 해당 안건을 심의·검토하고, 그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채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,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사항은 아님
3. 보고사항: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함
4. 논의사항: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될 사항으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의하며, 결의를 요하지 않음

제 16 조(결의사항)

① 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.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3 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, 유가증권, 자산, 상품,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서 1,000 억원 미만인 거래의 승인 <개정 2023.12.20>
2. 회사가 제 1 호 소정의 거래의 주요내용(거래의 목적 및 대상, 거래의 상대방, 거래의 금액 및 조건,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)을 변경하는 행위
3.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및 이행
 - 가. 리스크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및 리스크 관리 관련 기준 및 제반 규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
 - 나. 주요 리스크관리 활동 필요사항 및 쟁점 파악
 - 다. 리스크관리 활동 이행
 - 라. 리스크관리 활동 평가: 리스크관리 활동으로 인한 개선 정도 모니터링, 평가 및 지속 개선 필요과제 선정
4. 리스크관리규정 등의 제 · 개정
5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16조의2(심의사항)

① 위원회는 회사 또는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합병, 분할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그 밖의

주요 조직개편 거래 중 회사의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(이하 “심의대상 거래”)에 관하여,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심의·검토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심의대상 거래에 관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, 거래조건의 공정성, 거래절차의 적정성, 이해상충의 유무 및 정도,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보호 여부,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검토하고, 그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해당 거래의 승인, 불승인, 변경, 거래조건의 결정 기타 해당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거래를 심의·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자문사에게 자료 제출, 보고, 출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, 외부 전문가 또는 기타 외부 인사에게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·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심의대상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
 - 2. 심의대상 거래 진행 경과에 관한 보고
 - 3. 관계 임직원, 외부평가기관, 자문사 기타 외부 전문가의 설명 또는 의견 제출
 - 4. 회사 내 관련 부서의 지원
 - 5. 필요 시 독립적인 재무·법률 전문가의 의견 청취 또는 자문사 선임
 - 6. 기타 심의·검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심의대상 거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·검토 및 의견채택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

제 17 조(보고사항)

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6 조 결의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위원 및 임·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.

제 18 조(결의사항 등의 통지 및 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제17조에 따라 심의·검토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 년 8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